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희귀질환관리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업무 중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는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질병관리청장의 업무 중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 규정(안 제13조제2항)

나.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희귀질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기준 등 규정
(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희귀질환과 관련된 정보·통계의 수집
· 분석 및 제공
2. 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희귀질환 관련 교육·훈련 및 홍보
3. 법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 및 관리

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희귀질환과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2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
3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(영리법인은 제외한다)
4.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
·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

④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
법인·단체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권한의 위임) (생략)	제13조(권한의 위임) ① (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2조제 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.
	1.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희귀질환과 관련된 정보·통계 의 수집·분석 및 제공
	2. 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희귀질환 관련 교육·훈련 및 홍보
	3. 법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 및 관리
<u><신 설></u>	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 각 호 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희귀질환과 관련된 업 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질병관리 청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 체에 위탁할 수 있다.
	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
<신 설>

2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

3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(영리법인은 제외한다)

4.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·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

④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·단체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	
연 락 처	(043) 719 - 8781